「글로컬사회혁신원 운영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0. 6. 8. 개정 판 (시행 2020. 3. 1.) → 2023. 11. 27. 개정 판 (시행 2023. 11. 1.)

바뀜 6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332/compare?from=981&to=1485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6:16:37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) 인성교육원(이하 “본원”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20-06-08〉	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)글로컬사회혁신원(이하 “본원”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20-06-08〉 * 사회봉사단 운영 규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
제2조(기능) 본원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전인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〈개정 2020-06-08〉 1. 교내·외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〈개정 2020-06-08〉 2. 인성교육관련 연구 진행 및 관리〈개정 2020-06-08〉 3. 인성교육진흥사 자격증 과정교육진행 및 검정관리〈개정 2020-06-08〉 4. 인성교육관련 교과 운영 및 관리〈개정 2020-06-08〉 5. 콘서비토리관련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관리〈개정 2020-06-08〉	**제2조(기능)** 본원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전인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〈개정 2020-06-08〉 1. 교내·외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〈개정 2020-06-08〉 2. 리더십교육관련 연구 진행 및 관리〈개정 2020-06-08〉 3. 〈삭제 2023-11-27〉 4. 리더십교육관련 교과 운영 및 관리〈개정 2020-06-08〉 5. 콘서비토리관련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관리〈개정 2020-06-08〉
제3조(기구) 본원의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진행 및 관리를 위해 교육운영팀, 교육개발팀, 콘서바토리·외부교육진행팀을 둔다. 교육운영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학생리더지도·관리한다. 교육개발팀은 교내외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, 연구를 진행한다.(수정) 콘서바토리·외부교육진행팀은 콘서바토리 운영 및 외부교육수주·진행을 담당한다.	**제3조(기구)** 본원의 리더십교육의 효과적인 진행 및 관리를 위해 교육운영팀, 교육개발팀, 콘서바토리·외부교육진행팀을 둘 수 있다..〈개정 2023-11-27〉 교육운영팀은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학생리더지도·관리한다. 교육개발팀은 교내외 리더십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, 연구를 진행한다.(수정) 콘서바토리·외부교육진행팀은 콘서바토리 운영 및 외부교육수주·진행을 담당한다.
제4조(임무)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. 1.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부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.〈신설 2020-06-08〉 2. 사무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.〈신설 2020-06-08〉	**제4조(임무)**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. 1.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.〈신설 2020-06-08〉 2. 사무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.〈신설 2020-06-08〉
제5조(인성교육위원회) 교내 인성교육관련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성교육위원회를 둔다. 1. 위원회 위원은 부총장(위원장), 인성교육원장(서기), 사회봉사단장, 처·실장, 인성교육원·사회봉사단 직원 각 1명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	**제5조(글로컬리더십교육위원회)** 교내 리더십교육관련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글로컬리더십교육위원회를 둔다. 1. 위원회 위원은 총장(위원장), 글로컬사회혁신원장(서기), 사회봉사단장, 처·실장, 글로컬사회혁신원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〈개정

현 행	개 정 안
2.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직교원의 경우 보직 기간으로 한정한다. 3.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. 4.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 ① 인성교육관련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(수정)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2023-11-27〉 2.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직교원의 경우 보직 기간으로 한정한다. 3.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. 4.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 ① 리더십교육관련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〈개정 2023-11-27〉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6조(인성교육실무위원회)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인성 교육실행위원회를 둔다. 1. 위원회 위원은 인성교육원장(위원장), 인성교육원 직원(서기), 학생처장, 교목부처장, 교무부처장, 시온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한 5명의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.(수정) 2.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직 재임 중에는 당연직으로 한다. 3.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. 4.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 ①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인성교육 실행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**제6조(글로컬리더십교육실행위원회)**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글로컬리더십 교육실행위원회를 둔다. 1. 위원회 위원은 글로컬사회혁신원장(위원장), 글로컬사회혁신원팀장(서기), 학생복지팀장, 교목처팀장,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팀장, 생활관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한 5명이내의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.〈개정 2023-11-27〉 2.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직 재임 중에는 당연직으로 한다. 3.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. 4.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 ①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〈개정 2023-11-27〉 ② 리더십교육 실행에 관한 사항 〈개정 2023-11-27〉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글로컬사회혁신원 운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대학") 인성교육원(이하"를 "대학")글로컬사회혁신원(이하"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능) 본원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전인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
1. 교내·외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
2. 리더십교육관련 연구 진행 및 관리
3.
4. 리더십교육관련 교과 운영 및 관리
5. 콘서비토리관련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관리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구) 본원의 리더십교육의 효과적인 진행 및 관리를 위해 교육운영팀, 교육개발팀, 콘서바토리·외부교육진행팀을 둘 수 있다..
교육운영팀은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학생리더지도·관리한다.
교육개발팀은 교내외 리더십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, 연구를 진행한다.(수정)
콘서바토리·외부교육진행팀은 콘서바토리 운영 및 외부교육수주·진행을 담당한다.

제4조 중 "부총장"을 "총장"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글로컬리더십교육위원회) 교내 리더십교육관련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글로컬리더십교육위원회를 둔다.

1. 위원회 위원은 총장(위원장), 글로컬사회혁신원장(서기), 사회봉사단장, 처·실장, 글로컬사회혁신원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2.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직교원의 경우 보직 기간으로 한정한다.
3.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.
4.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리더십교육관련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글로컬리더십교육실행위원회)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글로컬리더십교육실행위원회를 둔다.

1. 위원회 위원은 글로컬사회혁신원장(위원장), 글로컬사회혁신원팀장(서기), 학생복지팀장, 교목처팀장,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팀장, 생활관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한 5명이내의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.
2.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직 재임 중에는 당연직으로 한다.
3.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.
4.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② 리더십교육 실행에 관한 사항
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